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정	2006. 7. 1	정관 제 1호
개정	2010. 2. 23	정관 제 2호
일부개정	2011. 10. 24	정관 제 3호
일부개정	2011. 12. 28	정관 제 4호
일부개정	2013. 7. 31	정관 제 5호
일부개정	2014. 2. 17	정관 제 6호
일부개정	2014. 10. 31	정관 제 7호
일부개정	2015. 10. 16	정관 제 8호
일부개정	2015. 12. 30	정관 제 9호
일부개정	2016. 12. 27	정관 제10호
일부개정	2017. 12. 21	정관 제11호
일부개정	2018. 7. 5	정관 제12호
일부개정	2019. 4. 16	정관 제13호
일부개정	2021. 7. 12	정관 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1>

제2조(명칭) 공단은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618번길 303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0. 24>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3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시에서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단의 공고 및 고시사항은 양주시보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게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규정의 제정) ①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18. 7. 5, 2019. 4. 16>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직제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이사회운영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연봉제규정, 회계규정, 임원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설립등기) 공단은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시의 인사·조직 업무를 관할하는 국·실장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그 밖의 비상임이사 3인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2. 23, 2013. 7. 31, 2014. 10. 31, 2015. 10. 16, 2016. 12. 27, 2017. 12. 21>

③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23>

④ 감사는 시의 공단관리 부서장을 당연직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3. 7. 31>

제8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단의 임원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23]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당연직 비상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새로이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0. 2. 23]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공단의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장 유고 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⑤ 임원의 직위별 주요담당직무 및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1. 10. 24>

제11조(조직 및 정원) ① 공단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② 정관이 정한 이외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제13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12. 27>

② 임직원이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6. 12. 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개정 2016. 12. 27>

제14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10. 31]

제16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이사장 또는 이사는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7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는다.

②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및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3>

제18조(신분보장)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기간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대리인의 선임) 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직원 중에서 공단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1조(자문위원) ① 이사장은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각종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9. 4. 16>

③ 삭제 <2019. 4. 16>

④ 삭제 <2019. 4. 16>

제3장 이사회

제22조(설치 및 구성)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기타 이사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수탁 및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
8.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9.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결권의 제한)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5조(회의소집 및 의장)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7〉

②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 12. 27〉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 개최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23]

제26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③ 제23조에 규정된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를 소집하기 곤란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제27조(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의사록 비치)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

제29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7. 12. 21, 2021. 7. 12>

1.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2. 버스승강장 청소
3.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4. 장흥국민관광지 관리운영
5.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6.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7.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8.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9.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10. 공설묘지 관리운영
11.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12.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1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단, 공설묘지 관리운영은 묘적부 등 관련문서 정비 후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4. 10. 31]

제30조(사업계획)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계획서를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이사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사업계획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보고된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시장이 시정을 명하는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32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3조(예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예산서를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이사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시정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계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제36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제37조(수입금의 처리) ① 공단의 일일 사업별 수입금은 익일(금융기관이 휴무일 경우 업무개시일) 시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있을 경우 일, 주, 월, 분기 등으로 시기를 정하여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② 삭제 <2019. 4. 16>

제38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시세입에의 납입
4. 임의적립금 적립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임의적립금
2. 이익준비금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39조(물품관리) ① 공단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수급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0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7. 5>

제41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사장은 시장에게 시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경영평가) ① 공단의 경영평가는 시장이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이사장의 임면과 공단의 업무개선, 평가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43조(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시가 출자한 자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4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5조(자금운용상황의 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 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영, 조례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임원의 임기) 공단의 최초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 ① 공단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
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단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임직원 임명 및 직
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제규정과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채용) 최초 설립 시 직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이 공단의 인
사규정에 따라 채용·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정관 제2호, 2010. 2. 23>

이 정관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3호, 2011. 10.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4호, 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15조 제5호와 제6호 및 제10조의 【별표 1】 중
‘버스승강장 청소’와 관련된 내용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5호, 2013. 7. 31>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6호, 2014. 2. 17>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7호, 2014. 10. 31>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8호, 2015. 10. 16>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9호, 2015. 12. 30>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10호, 2016. 12. 27>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11호, 2017. 12.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12호, 2018. 7.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13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14호, 2021. 7. 12>

이 정관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1. 10. 24, 개정 2014. 10. 31, 2021. 7. 12〉

직무수행요건

직위명 : 이사장

1. 주요담당직무

-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사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총괄 운영
 -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 버스승강장 청소
 -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 장흥국민관광지 관리운영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2. 직무수행요건

-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
- 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하여야 함

직무수행요건

직위명 : 비상임이사

1. 주요담당직무

-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 공단의 주요 경영정책을 심의/의결
- 공단경영에 대한 정책 제언, 자문 등의 경영지원 업무수행

2. 직무수행요건

- 비상임이사 : 지방공기업에 대한 학식과 역량, 자질과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

